

의안번호	제1029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시·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2년 4월 22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시·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29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2년 4월 22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지난 4. 20일 공직선거법이 일부개정 공포되고, 광역의원 선거구의 신설 및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대비 인구 15%이상 증가 지역 발생 등으로 시·군의원 지역선거구에 대한 조정사유가 발생됨에 따라,
-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시·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·군의원지역선거구 획정안을 마련

2. 주요내용

- 시·군의회 의원 정수 : 136명(4명 증가)

구분	계	청주	충주	제천	보은	옥천	영동	증평	진천	괴산	음성	단양
계	136	42	19	13	8	8	8	7	8	8	8	7
지역	119	37	17	11	7	7	7	6	7	7	7	6
비례	17	5	2	2	1	1	1	1	1	1	1	1

- 시·군의원 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(별표 2)
 - 광역 선거구 신설로 기초의원 선거구가 증가한 청주시 2명 배정,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인구 15%이상 증가지역인 진천군 1명 배정
- 청주시 비례대표 의원 1명 증가
- 보은군 “가”선거구 인구상한 초과 해소를 위해, “다”선거구 의원정수 1명을 “가”로 이동, 삼승면을 “나”선거구로 이동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 없음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시·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시·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[별표 1]

시·군의회의 의원 정수

구 분 시군별	의원정수			비 고
	계	비례대표 의원정수	지역구 의원정수	
계	136	17	119	
청 주 시	42	5	37	
충 주 시	19	2	17	
제 천 시	13	2	11	
보 은 군	8	1	7	
옥 천 군	8	1	7	
영 동 군	8	1	7	
증 평 군	7	1	6	
진 천 군	8	1	7	
괴 산 군	8	1	7	
음 성 군	8	1	7	
단 양 군	7	1	6	

[별표 2]

시·군의원 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

구 분	지역구 명 칭	지역구 선출의 원정수	선거구역	비 고
충청북도	합계	119	48개 선거구	
청주시	소계	37	14개 선거구	
	청 주 시 “가”선거구	2	낭성면, 미원면, 가덕면, 남일면, 문의면, 용암제2동	
	청 주 시 “나”선거구	3	중앙동, 성안동, 탑대성동, 금천동, 용담·명암·산성동	
	청 주 시 “다”선거구	3	영운동, 용암제1동	
	청 주 시 “라”선거구	3	남이면, 현도면, 산남동, 분평동	
	청 주 시 “마”선거구	3	사직제1동, 사직제2동, 모충동, 수곡제1동, 수곡제2동	
	청 주 시 “바”선거구	3	사창동, 성화·개신·죽림동	
	청 주 시 “사”선거구	3	오송읍, 강내면, 강서제1동	
	청 주 시 “아”선거구	3	옥산면, 운천·신봉동, 봉명제2·송정동, 강서제2동	
	청 주 시 “자”선거구	2	복대제1동, 봉명제1동	
	청 주 시 “차”선거구	3	복대제2동, 가경동	
	청 주 시 “카”선거구	2	내수읍, 북이면, 오근장동	
	청 주 시 “타”선거구	3	오창읍	
	청 주 시 “파”선거구	2	우암동, 내덕제1동, 내덕제2동	
	청 주 시 “하”선거구	2	울량·사천동	

구 분	지역구 명칭	지역구 의원 수	선거구역	비 고
충주시	소계	17	7개 선거구	
	충주시 “가”선거구	2	신니면, 노은면, 양성면, 중앙탑면	
	충주시 “나”선거구	2	주덕읍, 살미면, 수안보면, 대소원면	
	충주시 “다”선거구	3	용산동, 지현동, 호암·직동, 달천동	
	충주시 “라”선거구	4	교현·안림동, 교현2동, 연수동	
	충주시 “마”선거구	2	금가면, 동량면, 산척면, 엄정면, 소태면	
	충주시 “바”선거구	2	칠금·금릉동, 목행·용탄동	
	충주시 “사”선거구	2	성내·충인동, 문화동, 봉방동	
제천시	소계	11	5개 선거구	
	제천시 “가”선거구	2	봉양읍, 백운면, 송학면	
	제천시 “나”선거구	2	의림지동, 청전동	
	제천시 “다”선거구	2	중앙동, 영서동, 용두동	
	제천시 “라”선거구	2	금성면, 청풍면, 수산면, 덕산면, 한수면, 화산동	
	제천시 “마”선거구	3	교동, 남현동, 신백동	

구 분	지역구 명 칭	지역구 의수 선출원정수	선거구역	비 고
보은군	소계	7	3개 선거구	
	보은군 “가”선거구	3	보은읍	
	보은군 “나”선거구	2	속리산면, 장안면, 마로면, 탄부면, 삼승면	
	보은군 “다”선거구	2	수한면, 회남면, 회인면, 내북면, 산외면	
옥천군	소계	7	3개 선거구	
	옥천군 “가”선거구	3	옥천읍	
	옥천군 “나”선거구	2	동이면, 이원면, 군서면, 군북면	
	옥천군 “다”선거구	2	안남면, 안내면, 청성면, 청산면	
영동군	소계	7	3개 선거구	
	영동군 “가”선거구	3	영동읍, 양강면	
	영동군 “나”선거구	2	용산면, 용화면, 학산면, 양산면, 심천면	
	영동군 “다”선거구	2	황간면, 추풍령면, 매곡면, 상촌면	
증평군	소계	6	3개 선거구	
	증평군 “가”선거구	2	증 평 읍(창동리, 중동리, 교동리, 초중리, 대동리, 증평리, 신동리)	
	증평군 “나”선거구	2	증 평 읍(내성리, 증천리, 남하리, 용강리, 죽리, 덕상리, 남차리, 울리, 장동리)	
	증평군 “다”선거구	2	도 안면(증평읍 연탄리, 송산리, 미암리, 사곡리 포함)	

구 분	지역구 명 칭	지역구 의 선출원정수	선거구역	비 고
진천군	소계	7	2개 선거구	
	진천군 “가”선거구	3	진천읍, 문백면, 백곡면	
	진천군 “나”선거구	4	덕산읍, 초평면, 이월면, 광혜원면	
괴산군	소계	7	3개 선거구	
	괴산군 “가”선거구	3	괴산읍, 칠성면, 문광면, 소수면	
	괴산군 “나”선거구	2	감물면, 장연면, 연풍면, 불정면	
	괴산군 “다”선거구	2	청천면, 청안면, 사리면	
음성군	소계	7	3개 선거구	
	음성군 “가”선거구	3	음성읍, 소이면, 원남면, 맹동면	
	음성군 “나”선거구	2	금왕읍, 생극면, 감곡면	
	음성군 “다”선거구	2	대소면, 삼성면	
단양군	소계	6	2개 선거구	
	단양군 “가”선거구	3	단양읍, 적성면, 단성면, 대강면	
	단양군 “나”선거구	3	매포읍, 가곡면, 영춘면, 어상천면	

관 련 법 규

【 공직선거법 】

- 제23조(자치구·시·군의회 의원정수)** ① 시·도별 자치구·시·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, 자치구·시·군의회 의원정수는 당해 시·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·도의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·시·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.
- ② 자치구·시·군의회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.
- ③ 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정수는 자치구·시·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.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.

- 제24조의3(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)** ①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선거구(이하 “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”라 한다)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·도에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.
- ②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학계·법조계·언론계·시민단체와 시·도의회 및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- ④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·시·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- ⑤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, 그 이유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⑥ 시·도의회가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.
- ⑦ 제24조제8항 및 제9항은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- ⑧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- 제26조(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)** ① 시·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(이하 “市·道議員地域區”라 한다)는 인구·행정구역·지세·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·시·군(하나의 自治區·市·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하며, 行政區域의 변경으로 國會議員地域區와 行政區域이 合致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行政區域을 말한다)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, 하나의 시·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·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, 그 시·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.
- ②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는 인구·행정구역·지세·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, 하나의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, 그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·도조례로 정한다.
-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·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·면(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. 이하 같다)·동(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·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.
- ④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·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한다.

부 칙

- 제4조(자치구·시·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)** 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의3제5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·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.
- ② 시·도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- ③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선거구별 의원 1명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치구·시·군은 읍·면·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에 속하도록 할 수 있다.

【 공직선거관리규칙 】

- 제4조(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)** ①법 제23조(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)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1.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법 별표 3의 시·도별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의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·시·군별 인구 비율과 읍·면·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 이 경우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및 읍·면·동수의 기준일은 최근의 통계에 따라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해당 시·도의 자치구·시·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되, 읍·면·동 통합이 있는 때에 읍·면·동수의

기준일은 통합 전 통계에 따를 수 있다.

2.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(이하 “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”이라 한다)정수는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에서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정하고, 지역선거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(이하 “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”이라 한다)정수는 그 나머지 인원으로 한다.

②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치구·시·군 안에서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